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19 선고 2019가단2297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유장미, 김기현, 이진성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김윤희, 황현정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8. 30.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이고, B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B의 모친으로서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20.경 C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B은 2018. 8. 30.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8. 11. 20. 이자연체 등으로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2. 12. D은행에 339,236,6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19. 4. 10.경 50,000,000원, 2019. 6. 10.경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바. 원고는 C,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4289호로 대위변제금 중 미회수금 338,000,613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7. 4.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9. 8. 2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C, B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의 대출이 실행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후 C은 2018. 11. 20.에 이르러 이자를 연체하였으며, 원고가 C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C,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그 주식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채무초과상태

1)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338,000,613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E, 성남시청, D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D은행에 대하여 3,966,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 B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일인 2018. 8. 30.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C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주식의 가치는 최소 350,000,000원에 이르므로,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C의 보통주식 7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지분율 47.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C은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2018. 11. 20.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으며, 2019년 초경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이르렀다.

② C은 ‘F’ 게임을 2017년 5월경 한국에서 출시하였으나 2018년 8월경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C은

위 게임 서비스 종료 이전에 사전 공지를 하였을 것이고, 그보다 더 이전부터 별다른 매출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C은 2018년 4월 대만에서 위 게임을 출시하였으나, 그로 인한 수익도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위 게임을 일본에서 출시하려 교섭을 하였으나, 교섭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는 C에 2018년 8월 69.명, 2018년 9월 6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직원들에게 당시 정상적으로 임금 등(2018년 8월 급여 합계 287,291,399원, 2018년 9월 급여 합계 262,138,120원)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2021. 5. 11.자 감정의견서에 첨부한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C의 2018. 12. 31. 기준 미지급비용이 13억여 원에 이르고, 2018년 11월경에는 직원이 6명 정도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④ C은 적극재산으로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50,000,000원, 특허권, 소프트웨어 등이 있었으나, 부채 규모는 이를 훨씬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여 그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으로 피고의 배우자인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금전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2018. 7. 5. C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G이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G이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B, G,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B, C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B은 피고 등과 통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10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별지]

목 록

B이 H(생.)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제4층 K호 전부를 임차할 때 H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 끝.

